

第 77·78 回 忠清北道教育委員會(臨時會)

會 議 錄

('97. 6. 26. ~ 6. 30.)

('97. 8. 12. ~ 8. 16.)

忠清北道教育委員會

第 77 回 忠清北道教育委員會(臨時會)

本 會 議 會 議 錄

(' 97. 6. 26. ~ 6. 30.)

忠清北道教育委員會

(會務部)會員委員會辦事處 謹啟

本會總會

(02-0-20-0-30)

會員委員會辦事處

목

차

1997 • 6 • 통권 제54호

I. 제77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3
II. 제77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11
III. 부 록	
1. 의사일정(안)	27
2. 충청북도과학전람회조례폐지조례안	29
3. 충청북도공업고등학교부설직업훈련과정설치조례폐지조례안	33
4. 충청북도방송통신고등학교수당지급조례폐지조례안	37
5. 충청북도중·고등학교특별장학생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1
6. 벽지학교 방문의 건	46

本 會 議 會 議 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1997년 6월 26일 (목요일) 11시 00분

議事日程 (제7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1. 제77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충청북도과학전람회조례폐지조례안
3. 충청북도공업고등학교부설직업훈련과정설치조례폐지조례안
4. 충청북도방송통신고등학교수당지급조례폐지조례안
5. 충청북도중·고등학교특별장학생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벽지학교 방문의 건

附議된 案件

1. 경과보고(의사과장 이흥무)
2. 제77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교육감 제출)
3. 충청북도과학전람회조례폐지조례안(교육감 제출)
4. 충청북도공업고등학교부설직업훈련과정설치조례폐지조례안(교육감 제출)
5. 충청북도방송통신고등학교수당지급조례폐지조례안(교육감 제출)
6. 충청북도중·고등학교특별장학생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7. 벽지학교 방문의 건(신용철위원 외 3인 위원)
8. 회의록 서명위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사회 : 의사과장 이흥무)

[제77회-제1차]

(11시 00분 개회)

● 의사과장 이흥쿠

지금부터 제77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전면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주악)

바로.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고 이어서 바로 본회의가 시작되겠습니다.

(11시 02분 개의)

● 의장 박재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 경과보고

● 의사과장 이흥무

의사과장 이흥무입니다.

먼저 임시회 소집 및 집회공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97년 6월 18일 교육감으로부터 집회 요구되어 같은 날 제97-6호로 집회 공고하였

습니다.

다음은 전회기 의결안건 처리결과입니다.

제76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신 '97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 5월 29일 제13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에서 교육위원회비 1,050만원이 전액 삭감 수정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금회 처리안건입니다.

금회에는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충청북도과학전람회조례폐지조례안과 충청북도공업계고등학교부설직업훈련과정설치조례폐지조례안, 충청북도방송통신고등학교수당지급조례폐지조례안과 충청북도중·고등학교특별장학생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신용철위원 외 3인 위원이 공동 발의하신 벽지학교 방문의 건을 처리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위원의 청가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이근수위원님께서 신병치료차 병원에 입원 가료 중에 있어 금번 회기동안 회의에 출석하실 수 없어 본도 교육위원회 회의규칙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청가서를 제출하셨으며 의장님께서 이를 허가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2. 제77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1시 04분)

● 의장 박재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77회 충청북도 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미 통보한 바와 같이 제77회 충청북도 교육위원회 임시회는 오늘부터 6월 30일까지 5일간으로 하여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의안과 위원 발의 의안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다만, 6월 27일과 28일 양일간은 벽지학교 방문을 위하여, 29일은 공휴일인 관계로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본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77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는 6월 26일부터 6월 30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 충청북도과학전람회조례폐지조례안
- 4. 충청북도공업고등학교부설직업훈련과정설치조례폐지조례안
- 5. 충청북도방송통신고등학교수당지급조례폐지조례안
- 6. 충청북도중·고등학교특별장학생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06분)

● 의장 박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과학전람

회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공업고등학교부설직업훈련과정설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방송통신고등학교수당지급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중·고등학교특별장학생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동일국 소관 안건이므로 일괄 상정합니다.

중등교육국장님께서서는 나오셔서 안건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중등교육국장 발언대로 나옴)

● 중등교육국장 송대현

중등교육국장 송대현입니다.

존경하는 박재현의장님 그리고 교육위원님 여러분!

'97년도 법령에 의한 교육규제 정비계획에 따라 중등교육국소관 조례중 폐지조례안과 개정조례안을 제77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에 제출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제출한 폐지조례안은 충청북도과학전람회조례, 충청북도공업고등학교부설직업훈련과정설치조례, 충청북도방송통신고등학교수당지급조례이고 개정조례안은 충청북도중·고등학교특별장학생에 관한조례로 각 안별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충청북도과학전람회조례는 충청북도과학전람회 개최에 관한 개최시기, 조직, 출품분야, 출품자격, 작품범위, 작품구역, 작품심사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매년

[제77회-제1차]

실시하는 충청북도과학전람회 전국 과학 전람회규칙 96년 8월 6일 총리령 제581호를 근거로 하여 교육감 지침으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본 조례는 존치하여도 그 의미가 유명무실한 것으로 사료되어 충청북도과학전람회폐지조례안을 제출합니다.

- ▶ 참조 충청북도과학전람회폐지조례안 : 별첨2
(끝에 실음)

둘째, 충청북도공업고등학교부설지역훈련과정설치조례는 비진학 청소년들에게 단기 직업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옥천공업고등학교 부설로 설치하였으나 옥천공업고등학교가 폐교 확정되었고, 중학생 졸업생은 고등학교로, 고등학생은 대학 또는 전문대학으로 진학의 기회가 확대됨에 따라 이입학 지원자의 급격한 감소로 운영이 곤란할 뿐만 아니라 현재 11개 인문계고등학교의 직업고 자영반 운영과 충청북도내 각 지역에 설치된 노동부 산하 공공직업훈련원 4개 기관을 이용하여 직업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학교 재학중 중도 탈락된 학생은 재입학시켜 수학의 기회를 주고 있기 때문에 본 조례의 설치운영은 유명무실한 실정이라 사료되어 충청북도공업고등학교부설직업훈련과정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 제출합니다.

- ▶ 참조 충청북도공업고등학교부설직업훈련과정설치조례폐지조례안 : 별첨3
(끝에 실음)

셋째, 충청북도방송통신고등학교수당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 사유로는 한국교육개발원 방송통신교육 연구 본부에서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사업 예산 협의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으며, 여기서 협의 조정된 사항을 방송통신고등학교 운영계획으로 대체하여 시행하므로 본 조례를 폐지하고 행정의 간소화 및 능률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 ▶ 참조 충청북도방송통신고등학교수당지급조례폐지조례안 : 별첨4
(끝에 실음)

네번째로 충청북도중·고등학교특별장학생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동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중·고등학교의 특별장학생 선발은 당해 학교 교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추천된 장학생 후보자중 고등학교는 교육감이 심의 선정하고 중학생은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규칙 제7조 제5에의거 지역교육장이 심의하여 선정하고 있습니다.

중·고등학교당 1명의 특별장학생을 선정하면서 학교와 교육청이 중복 심의를 하고 있는 바 특별장학생 선정에 관한 권한을 교육감, 교육장에서 당해 학교장에게 위임하고 업무를 간소화하기 위함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참조 충청북도중·고등학교특별장학생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별첨5
(끝에 실음)

이상으로 중등교육국소관 폐지조례안 및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등교육국장 자리로 돌아감)

● 의장 박재현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한 처리는 의안내용이 간단하여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오는 6월 3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직접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7. 벽지학교 방문의 건

(11시 13분)

● 의장 박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벽지학교 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신용철위원 외 3인이 공동발의한 의안으로 발의 위원을 대표하여 신용철위원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철위원 발언대로 나눔)

● 신용철 위원

신용철 교육위원입니다.

벽지학교 방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제반 교육환경 여건이 열악한 도내 일부 벽지학교를 방문 교육여건 및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묵묵히 학생지도와 학습능력 향상에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교직원과 학생들을 격려함으로써 사기진작을 도모함은 물론 일선 교육현장의 의견수렴을 통한 교육의정활동 자료를 수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방문기간은 '97년 6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이며 첫째날인 6월 26일에는 제1차 본회의를 산회한 후 진천지역의 백곡초등학교 성대분교장을 둘째날인 27일에는 음성지역의 남신초등학교덕생분교장과 생극초등학교 관성분교장을 셋째날인 28일에는 청천초등학교신월분교장을 방문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인 외 3인위원이 발의한 본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77회-제1차]

감사합니다.

▶ 참조 벽지학교 방문의 건 : 별첨6
(끝에 실음)

(신용철위원 자리로 돌아감)

● 의장 박재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이의있으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벽지학교 방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회의록 서명위원 선출의 건

(11시 16분)

● 의장 박재현

다음은 금회 회의록 서명위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순서에 따라 조일환, 이경운 위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77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위원으로 조일환, 이경운 위원이 선출되었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후부터 오는 6월 28일까지 도내 벽지학교의 방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집행청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산회)

0 출석위원 : 10명

의장 박재현, 부의장 조일환, 위원 김정길, 정만재, 이기수, 김광수,
신용철, 박동기, 안병일, 이경윤.

0 출석공무원 : 15명

교육감 김영세, 부교육감 구관서, 초등교육국장 조성근,
중등교육국장 송대현, 관리국장 신재철, 공보담당관 김홍목,
기획감사담당관 김진성, 행정관리담당관, 정금옥, 초등교직과장 노현우,
중등장학과장 이재관, 과학기술과장 백경흠, 총무과장 고일영,
행정과장 이상찬, 재무과장 이기수, 시설과장 박성근.

※ 부 록

- ▶ 의사일정(안) : 별첨1
- ▶ 충청북도과학전람회조례폐지조례안 : 별첨2
- ▶ 충청북도공업고등학교부설직업훈련과정설치조례폐지조례안 : 별첨3
- ▶ 충청북도방송통신고등학교수당지급조례폐지조례안 : 별첨4
- ▶ 충청북도중·고등학교특별장학생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별첨5
- ▶ 벽지학교 방문의 건 : 별첨6

本 會 議 會 議 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1997년 6월 30일 (월요일) 11시 01분

議事日程 (제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1. 충청북도과학전람회조례폐지조례안
2. 충청북도공업고등학교부설직업훈련과정설치조례폐지조례안
3. 충청북도방송통신고등학교수당지급조례폐지조례안
4. 충청북도중·고등학교특별장학생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기타안건 처리

附議된 案件

1. 충청북도과학전람회조례폐지조례안(교육감 제출)
2. 충청북도공업고등학교부설직업훈련과정설치조례폐지조례안(교육감 제출)
3. 충청북도방송통신고등학교수당지급조례폐지조례안(교육감 제출)
4. 충청북도중·고등학교특별장학생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11시 01 개의)

● 의장 박재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금일은 지난 9월 26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 들으신 충청북도과학전람회조례폐

지조례안등 3건의 폐지조례안과 충청북도중·고등학교특별장학생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안건별 질의 토론을 거쳐 심의의결하시겠습니다.

1. 충청북도과학전람회조례폐지조례안

(11시 02분)

● 의장 박재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과학전람회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질의 및 답변은 일괄 질의후 일괄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의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일환 위원 거수하여 “예, 제가 조금 질의를 할까요?” 하고 말함)

예

● 조일환 위원

제가 편의상 앉아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 의장 박재현

나오셔서 질의하시죠.

● 조일환 위원

예

(조일환위원 발언대로 나옴)

● 조일환 위원

먼저 질의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저희 위원회에서 본 조례에 대해서 소위원회를 저희들이 구성을 하고 또 거기에서 심의있는 그런 심사가 됐으면은 오히려 더 회의진행이 매끄럽고 좋지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일정을 잘못 알아서 10시에 저희 위원님들 간담회가 계신줄 알고 저는 9시에 왔는데 11시에 간담회 없이 바로 본회의가 진행돼 가지고, 제가 앞으로 질의나 또는 어떤 안을 상정을 하려는 제가

위원님들께 혹시나 사전에 아무런 동의도 없이 제 나름대로 한다는 이러한 그 비판의 소리를 제가 면치 못합니다.

그러나 제 나름대로는 그런 뜻은 아니고 저희 충북교육을 아끼고 사랑한다는 생각에서 오늘 제가 몇가지 질의를 하면서 혹시 질의와 관계되는 몇가지 의견을 개진할 것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그 교육행정 규제완화, 이것도 이제 교육개혁 차원에서 지금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과 방침 그리고 본도의 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충청북도 과학전에 과학조례가 폐지후 앞으로 향후 개최 전망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충북과학전조례가 과학교육, 사무, 과학기술진흥, 기타 충북과학전 개최 등의 주제나 저해가 되는 조, 또는 항을 있다면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충청북도과학조례 폐기후 과학전을 개최할 경우 행정, 예산 근거의 규칙이나 법령은 무엇에 근거할 것인가, 이것이 먼저 제안설명에서 다소 미흡하고 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일환위원 자리로 돌아감)

● 의장 박재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김정길 위원

아니 의장님, 본 위원이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의장 박재현

예

● 김정길 위원

편의상 앉아서 말씀 좀, 발언권을 주시겠습니까?

● 의장 박재현

그럼 답변 들으시고 하실까요 그럼?

● 김정길 위원

아니 답변듣기 전에 말이죠 집행부의 답변 듣기 전에 본 위원이 발언권을 한 3분만 신청을 하겠습니다.

● 의장 박재현

이 문제에 관한 내용입니까? 과학조례.....

● 김정길 위원

예 그렇습니다.

● 의장 박재현

그럼 질의하시죠.

● 김정길 위원

예, 죄송합니다.

지금 그 조례안을 지금 조일환위원님께서

집행부에서 답변을 요청을 하시는데 이 조례안이 본회의에 상정되기 전에 본 위원회에 상정되기 전에 집행부의 우리 교육위원회 의사국이나 의장님이나 부의장님 계시는데 아마 토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위원들이 간담회 시간에도 이 문제를 가지고 토의를 해가지고 폐지 조례안이니까 원안대로 가결을 하자 하는 이런 간담회에도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본회의장에서 이것을 가지고 또 이 조례안을 가지고 집행부에서 답변을 요구하는데 저는 이것이 좀 잘못된 것이라고 봅니다.

이것을 답변을 요구하기 전에 반대를 하면은 무엇때문에 어느 조례 몇항몇항 뭐가 문제가 돼서 반대를 한다 이렇게 반대 의사를 개진을 하고 난 뒤에 거기에 또 찬성토론이 있다면은 찬성토론에 붙이고 그 다음에 위원들의 표결에 붙이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지금 또 집행부에서 또다시 이것을 갖다가 질의를 해가지고 그 질의를 듣고 찬성토론을 하고 이것은 회의진행상 잘못된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집행부에서 답변을 하기 전에 누가 찬성토론을 하실 분이 있으면은 그 찬성토론을 듣고난 뒤에 전 위원들이 벌써 조례안을 다 검토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성토론을 듣고 표결에 붙이는 것이 회의진행 순서상 원칙이 아니

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의장 박재현

그것은 진행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질의를 청취하고 있고 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되어 있으니까 질의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일환 위원

제가 조금 신상발언이랄까, 저도 이 질의 내용이 우리 본청에서도 자료를 아주.....

● 의장 박재현

그것은 이따가 보충 때 말씀해 주시죠.

● 조일환 위원

아니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제 나름대로 말씀을.....

● 의장 박재현

아니 이따가 해주세요.

● 조일환 위원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 의장 박재현

예

● 조일환 위원

그리고 저희들이 간담회 때 통과를 되자 안되자 그렇게 우리가, 제가 알기로는 의결한 것이 아니고 이것이 사안이 간단하니까 우리가 조례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의장님께서 그렇게 의견을 물으셨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이것은 제가 9시에 여기 출근을 해서

사전에 제 나름대로 집행청의 편의를 도모한다고 할까 제가 이러한 부분을 간단히 질의를 할테니 혹시 여기에 대한 준비를 해주십시오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전달을 했습니다.

양지해 주시고 오늘 제가 혹 회의진행 순서가 잘못됐거나 했다면 좀더 지도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 의장 박재현

예, 관계관계서 나오셔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죠.

(중등교육국장 발언대로 나오)

● 중등교육국장 송대현

중등교육국장 송대현입니다.

조일환위원님께서 충청북도과학전람회조례폐지에 대한 여러가지 우려되는 바가 있어서 짚어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대로 성심껏 답변을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질의 요지가 교육규제완화 목적, 방침, 실적에 대한 말씀을, 저는 깊은 조예는 없습니다만은 제가 아는 범위에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근거는 교육법 법무 12320호-72, '97년 1월 30일에 의한 교육규제 정비로서 일선 교육현장의 자율적인 교육활동의 기반구축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모든 규제대상이 되는 것이라든가 법령 조례를 정비하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 정비 기준은 교육환경 및 행정 여건의 변화로 규제의 실효성이 상실된 주제, 동일 또는 유사 목적의 다른 규제가 존재하는 중복 규제, 일선 현장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교육활동을 저해하는 규제 등 일제히 정비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과학전람회 조례는 그 상위법인 총리령에 의해서 또 교육감님의 지침에서 시행해도 하나도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차질이 없기 때문에 이런 정비 차원에서 조례 규제완화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오늘 상정하게 된 내용입니다.

그 실적, 어떤 실적이 있느냐 하는 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조위원님 질의이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과학전 폐지후 향후 개최 전망이 어떠냐 하는 말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도 변화가 없습니다.

더욱 이것은 국민 과학교육 진흥을 위해서 더욱 강화되면 되었지 이것이 이 조례가 폐지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과학전람회를 안 하고, 일면 두가지 성격이 있습니다.

하나는 본도의 과학전람회의 행사의 목적도 하나 있지마는 전국 과학전람회 예비, 두가지 성격을 겸해서 우리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과학전람회는 총리령에 의해서 전국 과학전람회 규정에 의거 매년 시달되는 과

학전람회 개최 요강에 따라 교육감이 지침으로 행사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대전광역시, 경기도, 충남 등 3개 시·도 외에는 조례로 정한 시·도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폐지되더라도 절대로 과학전람회가 더 지금보다 부진하다든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들 쏟는다든가 하는 사례는 있을 수가 없고 더욱 이것은 국민 모두가 관심을 쏟는 그런 분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 더욱 앞으로 발전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세번째 말씀하신 것이 과학전 조례의 그 폐지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규제나 저해가 되는 것이 몇조 몇항이나 하는 그런 말씀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이것은 상위법하고 저희들 조례하고 봤을 적에 전국 과학전람회 규정의 총리령 속에서 하고 저희 충청북도 과학전람회 조례를 비교해 봤을 적에 출품 자격에는 문제가 될 것이 없고 출품 부문만 보더라도 상위법에는 또 자세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과학작품 대회와 학생 작품 지도 논문대회로 구분하고 지도교사 승진점을 인정하고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농림, 수산, 공업, 환경, 기타 8개 부문으로 우리 조례에는 지도교사의 승진점을 지금 인정하는 부분이 없고요, 또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농림, 수산, 공업 6개 부문 8개가 아

[제77회-제2차]

니라 6개 부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대의 변천에 따라서 난경이라든가 이런 급변하는 대응에서 총리령에 의해서 자꾸 지침이 상부에서 상위법이 지침이 변해오는데 그때마다 우리의 조례를 그에 능동적으로, 물론 거기에 좀 포괄적인 규정은 조례 속에 들어 있습니다. 뭐 할 수 있다 하지만은 구체적으로 부문같은 것은 포괄적인 것보다는 조례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러한 규제의 부분들이 능동적으로 또 창의적으로 대처하자면은 이것을 폐지하고 위 상위법인 총리령에 따라서 그때그때 교육감님의 지침을 받아서 우리의 특색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삽입하고 하는 것이 더 저희들이 옳다고 생각해서 조례가 과연 유명무실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배경 속에서 올리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려 둡니다.

구체적인 몇조 몇항 하는 것은 지금 일례로 그것만 드렸습니다만은 출품 제한 같은 데서도 총리령과 우리 조례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조례 속에는 제작후 4년이상 경과된 작품 이렇게 하나만 단순히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상위법에서는 본인이 직접 창안하여 연구한 것이 아닌 작품, 국내외에서 이미 공개되거나 발표된 작품, 인체에 해로운 영향을 줄 수 있는 작품, 이런 것은 출품 제한 작품으로 상위법에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가지 지원에 관한 문제도 있고 이래서 우리 상위법과 교육감님의 지침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훨씬 이 과학전람의 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해서 제출하게 된 배경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네번째 말씀하신 폐지후 개최될 경우 행정이나 예산, 그 근거가 무엇이나, 무엇에 근거한 것이냐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근거는 상위법에 과학전람회를 개최토록 되어 있고 또 저희들 예산을 다뤄주시는 것이 위원님들이십니다.

이것이 앞으로 될 수 있도록 올렸을 적에 심사해 주시고 예산을 통과해 주시면 그것에서 저희들이 지원도 하고 행정을 떠나갈까 하는 생각입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조일환위원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보다 한번 깊어주시는 차원으로 이미 제정되었던 것을 오랫동안 시행해 왔던 것을 갑자기 없애는게 아마 이런 것이 염려되지 않나 해서 지적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맙게 생각하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조일환 위원

제가 저 국장님.....

● 중등교육국장 송대현

예, 말씀하시죠.

● 의장 박재현

아니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충질의.....

(조일환위원 거수하여 발언신청)

● 조일환 위원

지금 저희 도 과학전의 기초를 전국 과학 전람회 총리령으로 개최하겠다,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 법조문에 어디에나 도의 전람회를 개최해라 말아라 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또 본 조례와 우리 충청북도 조례와 국무총리령과는 상당한 궤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주체 주관이 다르고 그리고 여러 가지 규정 제한이 따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충청북도 과학전을 전국 과학전람회 규칙에다 준거한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 두번째, 아까 말씀하신 조례와 지침, 조례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그 고유사무와 위임사무 따위에 대하여 법령을 동의하면 동의 안에서 지방의 의회의 의결에 의하여 개정하는 입법의 한 형식입니다.

그렇다고 볼 때에 본 충청북도 과학전람회 조례는 분명히 상위법의 법령안에서 제정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또 지침이라는 것은 국어 낱말사전에 지시하는 어떤 바늘 또는 조목조목 어떤 것을 어떻게 해라 하는 남을 지시하는 행동에 어떤 지침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례는 지속성있고 법적인 보장이 있습니다만 지침은 그때 필요할 때 행정적인 령에 불과하다. 이렇게 볼 때에는 이 조례가 우리 국장님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좀 더 차원 높은 데서 이것이 고려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육감 김영세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 조일환 위원

예

● 교육감 김영세

우선 먼저 이 상위법령이 내려오며는 지방에 조례가 있더라도 조례가 효력을 발생 못합니다.

총리령이 상위법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이 과학전람회조례를 지금 제정하고 있는 도는 불과 3개 도에 불과합니다.

이 3개 도에 불과한 도가 그때 일찍이 이것을 조례를 마련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해마다 과학전람회라는 게 이 조례에 근거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매년 총리령에 의해서 내려와요. 총리령에 의해서 이제 개최요강이 내려옵니다.

개최요강이 내려오며는 그 도 실정에 맞게 대회를 주최해 주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 자체 조례를 가졌더라도 총리령에 의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 조례를 적용시켜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조례가 끝 유

[제77회-제2차]

명무실화 됐다 이겁니다 유명무실화가 되었고, 또 그런 배경에는 이 과학전람회가 과학기술처가 주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부하고 이것이 실제 일선의 과학전람회를 주관하는 것은 교육청이 주관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과학기술처에는 총리한테 올려서 더 상위에서 상위법 법령으로 이 요강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육부도 거기에 따라서 같이 협조를 하게 돼서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이 조례를 가졌더라도 유명무실화 됐다 적용을 못했어요 적용을 못하는데, 과학전람회의 범위가 매년 달라져요. 매년 달라지는데 매년 달라지면 우리는 이 조례를 매년 그 총리령에 의해서 이 조례에 입각해서 한다면은 그 과학전람회를 개최한다면 조례를 매년 바꿔야 돼요. 매년 보완해 줘야 된다 이런 애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부의장께서 질문하신 이 각종 여러가지 훈령, 지침, 규정 이러한 그 규제완화는 작년 말로 규제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까지 이 각종 훈령이나 예규나 지침이나 규정상에서 개정을 하지 않은 것은 자동 폐지가 됐습니다.

그럼 본도에서는 작년 1년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각종 규정이나 훈령을 개정한 것이 49.1%를 개정했어요. 총 373건을 가진 중에서 233건을 개정 또는 폐지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추진상으로는 약 49.1%가 폐기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법규정이나 법규정이라는 조례가 거기에 들어가죠. 이것은 금년 말까지 우리가 필요없는 조례는 우리가 개정을 하지 않는 한 자동 폐기가 됩니다. 금년 말까지.

이것이 규제완화의 앞으로의 방향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이 조례를 가졌더라도 이것을 적용하지 않고 금년에 다시 이것을 보완하지 않는 한은 금년 말에 가면은 자동 폐기로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찍 규제완화 차원에서 이에 대한 폐기안을 규제심의에서 완화심의 위원회에서 이 안건을 내게 된 것이죠. 실제로 우리 현장에 총리령에 의해서 이 조례 자체가 상위법에 의해서 규정이 되기 때문에 무색화 됐어요. 그리고 내용을 보더라도 매년 내용이 바뀌기 때문에 지금 얘기한 출품자격이라든지 또 결과 포상 문제도 총리령으로 구체적으로 내려와요. 우리 조례에서는 고가점수 주는 게 구체적으로 없어요. 또 예컨대 응모자격에도 어떤 문제가 있는고 하니 어느 한 개인이 작품을 만들다가 작품을 만들어 놓고 전시회 게시를 못하고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요절했다. 그때는 그 미망인도 출품자격을 갖는다.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는 전혀 없는데 이런 것들이 총리령에는 그해 그해 총리령이 내려오기 때문

에 이게 보완돼서 나온다. 그러면 실제로 일선에서 이 과학전람회 조례안이 어떤 우리한테 규제를 주는 것은 없더라도 실전 무색한 내용이 아무것도 없는 이런 것이 됐고 그래서 이런것 등이 조례로 해서 과학전람회가 된다면 타도에서도 이것 다 만들어야죠. 그런데 그때그때 이제 이 조례가 제정될 때 어떤 지침이 왔을 거예요 교육부에서 부령이 내려왔는데 그때 이것을 일찍 만들어 놓았는데 그후로 활용 가치가 없으니까 타도에서는 이것을 안만들은 것입니다.

실정은 그러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런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금년에 우리가 폐기하든지 제정하지 않는 한, 다시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유지한다고 결의하지 않는 한 금년 말에 가면 그냥 유명무실한 조례로 돼서 폐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찍 우리는 규제완화 차원에서 이것을 상정하게 된 거죠. 그래 조례에 대한 폐기는 규제완화위원회에서만 자동 폐기가 아니고 이것은 반드시 의회를 통해서 되기 때문에 이것을 일찍 우리가 상정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조일환 위원

예 많은 참고되겠습니다.

● 의장 박재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해 토론이나 기타 다른 의견 있으신 분 계십니까? 더이상 토론이 나.....

(조일환위원 거수하여 “예 제가 조금 있습니다.”하고 말함)

● 조일환 위원

의장님 제가 토론하겠습니다.

● 의장 박재현

토론하시겠어요?

● 조일환 위원

예

● 의장 박재현

미처 몰랐습니다. 미안합니다.

● 조일환 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토론의 순서에 의해서 제가 지금 질의도 답변을 듣고 여러 가지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 의장 박재현

반대토론을 하시죠

● 조일환 위원

예, 그래서 제 나름대로의 본 폐지안에 대해서 반대토론의 저의 근거와 제 나름대로 의견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교육감님 그리고 교육가족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제77회-제2차]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 매진하시는 여러분
께 감히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의 금번 토론은 위원 활동의 실적
이나 홍보 차원이 아니라 충북 과학교육의
진흥과 도민 생활의 과학화를 촉진해야 하
는 도 과학전 운영의 충실을 위한 순수한
동기에서 그 의미를 찾고자 하오니 위원 여
러분들께서는 본 위원의 토론 내용을 경청
하시고 고견의 본 의견을 결정해 주실 것
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금번 교육개혁 추진으로 과도기적인 혼란
기에서 교육감님께서는 여러 교육 영역의
개선과 창의적인 제도 도입으로 충북교육이
새로운 모습으로 발전하고 있음은 이미 주
지의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본도 과학전의 목표를 상실
한채 도 과학전이 전국 예선대회로 전락할
우려가 예상돼서 주최, 주관이 다른 국무총
리령을 기준하는 것은 합리적인 생각이 아
니라고 사료됩니다.

그 이유로 첫번째, 과학은 지속적이고 창
의적인 특성상 도 과학전의 생산인 사무 그
예산의 근거가 되는 조례로 상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둘째, 총리령 제581호 '96년 8월
6일 개정의 규칙으로 도 과학전 개최 조례
를 대체하는 것은 특색있는 충청북도 나를
대로의 특색있는 과학교육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셋째, 요즘 과학의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과학에 기본을 두고 있습니다.

산업이 어려워서 국가에서는 벤처기업을
국가경쟁력 최후의 무기로 하고 국제무역수
지는 말할 것도 없고 세수의 결함으로 국가
의 재산을 파는 형국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경제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오직 벤처 산업이 요구하는 유능한 인재의
양성을 우리 교육의 최우선 과제의 목표로
달성하여서 과학교육 분야에 역점을 두어야
할 이런 시기라고 저는 사료됩니다.

넷째, 금년 제43회 도 과학전이 개최되고
있으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과학교육을 육
성 발전하고 이 촉진의 일환으로 도 과학전
이 개최되고 있는 사실에 우리는 주의하여
야 합니다.

특별히 역점사업으로 세계화·정보화·과
학화에 교육개혁 수행의 초점을 맞추어서
임기 1년 6개월동안의 그 가시적인 성과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하면서 저는 평소 감
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조례가 조례 정비를 위한 준비나, 아
니면은 진정 과학교육이나 여타 규칙에 상
치되므로 이러한 조례는 유명무실한 것이다
이렇게 판단할 것이나, 본 위원은 생각컨데
충청북도 조례로 인한 사무적인 비능률 교
육의 규제, 기타 교육활동에 지장을 주는
요소가 전혀 발견된 바가 없습니다.

다만 조례 정비를 위한 준비는 본 위원은
부당하다고 판단되어서 반대토론을 하오니

모쪼록 여러분들께서는 풍부한 식견으로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서 충북과학전람회 및 과학교육 전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일환위원 자리로 돌아감)

● 의장 박재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철위원 거수하여 발언신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철위원 발언대로 나옴)

● 신용철 위원

교육위원 신용철입니다.

제가 찬성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양해를 좀 구할까 합니다.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 마는 이 과학전람회조례 폐지에 대해서 사전에 우리가 의장단에 의안이 제출됐을 때 그때 어떤 가부간의 결정이 선행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다음에는 저희가 협의회할 때 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심사숙고해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심의를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사전에 분명히 짚고 넘어갔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현지 출장을 다니는 동안에라도 사실은 이런 문제가 대두되었다며는 마지막날 오후에 협의회를 갖는 이러한

의장단의 움직임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지금 진행과정에 제가 느꼈습니다마는 분명히 질의를 하고 또 토론을 하는 과정에 반대로론하신 위원님이 의장님으로부터 발언권을 정식으로 받고 이렇게 하고 동의를 받아서 여기에 대한 토론이 되는 것이 정상이 아니냐,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도 뭔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충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의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과학교육 진흥을 위하여 충북과학전람회조례가 존치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조일환 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한 반대 입장으로 과학전람회조례가 폐지되어야 하는 당위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중등국장님이 답변을 하였고 또 토론에 대한 교육감님의 구체적인 사항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내부적인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설명을 생략을 하고 개괄적인 것은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총리령에 의해서 환경, 과학 등 포괄적으로 제가 조사된 바에 의하며는 총리령에 과학기술처의 규칙 또는 여기 지침에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기술처의 규칙과 지침이 매년 시달되기 때문에 조례에 의해서 운영을 한다면은 매년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이런 문제점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제77회-제2차]

그래서 총리령에 의해서 충청북도과학전람회가 현재까지 과학기술의 진흥과 국민생활의 과학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교육청에서는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전국 과학박람회는 총리령에 의하여 과학기술처가 주체하고 중앙과학관이 주관하는 대회로 각 시·도에서 선발된 작품으로 참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회를 주관하는 국립중앙과학관에서는 총리령에 의한 매년 대회 규정과 규칙에 의해서 계획을 각 시·도에 시달하면 전국대회 규정에 따라서 교육감이 지침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 행사이기 때문에 현재 과학전람회와 같이 전국대회를 실시하고 있는 도의 행사도 여러 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기술분야만 해도 청소년 과학경진대회, 학생발명품 경진대회, 수학·과학경시대회, 탐구 올림픽대회, PC경진대회, 영농경진대회 등 이렇게 많은 도 행사가 있습니다.

이 모든 도 행사는 전국대회 규정에 따라서 교육감이 지침으로 시행을 하고 또한 타 시·도의 전국적인 현황을 살펴볼 때 15개 시·도중 3개 도인 대전, 충남, 경기도만 전람회 조례가 있고, 또 제가 전화로 확인한 바는 충청남도 지금 폐지조례안을 제안 중에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3개 시·도를 제외한 타시·도가

총리령에 준거해서 교육감 지침으로 시행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며, 지방자치법에도 과학전람회 조례가 존치하여야 한다는 구속된 그러한 법적 조항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전국체육대회, 청소년 체육대회, 또 도민 체육대회, 기능 경기대회 등 행사도 도에서 주관하는 행사가 조례가 규정된 바는 없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조례가 없는 11개 시·도 가운데 부산교육청도 작년 '96년도에 교육규제 차원에서 조례가 폐지되었고 또 저희도 조례규제심의위원회 지침에 의해서 폐지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고 이와 같이 교육환경과 행정여건 변화와 일선 교육현장이 자율적이고 창의적으로 교육활동을 저해하는 이러한 법이 있다면은 이 규제는 철저히 폐지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며 이는 또한 시대적 요청이기도 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충북도의 교육발전에 저해가 되는 조례를 존속시켜서 우리 교육발전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며 본 조례의 폐지를 주장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하나 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총리령과 본도 조례 내용은 상이점이 많고, 아까 대조를 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저도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 예를 들면 지도교사의 승진가산점 인정 또는 우수 작품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등 시대 변화에 따른 규칙의 잦은 변경으로 대회의 능률을 저해하고 행정적 낭비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현재 충북교육청에서 실시하는 과학전람회는 과학전람회의 조례가 존치하여도 그 의미가 사실상 유명무실할 뿐만 아니라 교육 국제화 또는 앞으로 세계화 추세에 역행되는 이러한 규제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행사에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이 돼서 본 조례를 폐지를 하고 전국대회 규정에 따라 교육감 지침으로 행하는 것이 타당하며 또한 본 조례안에 대하여 폐지를 찬성합니다.

감사합니다.

(신용철위원 자리로 돌아옴)

● 의장 박재현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다른 위원님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찬성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본 건에 대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본건 폐지조례안을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1명)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8명)

표결결과 충청북도과학전람회조례 폐지조례안은 찬성 8, 반대 1로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충청북도공업고등학교부설직업훈련과정설치조례폐지조례안

(11시 41분)

● 의장 박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공업고등학교부설직업훈련과정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건에 대해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해 이의없으시죠?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공업고등학교부설직업훈련과정설치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충청북도방송통신고등학교수당지급조례폐지조례안

(11시 42분)

● 의장 박재현

[제77회-제2차]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방송통신
고등학교수당지급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
니다.

본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건에 대해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해 이의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방송통신고등학교
수당지급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충청북도중·고등학교특별장학생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44분)

● 의장 박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중·고등
학교특별장학생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
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해 이의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중·고등학교특
별장학생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

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셨
습니다.

위원장 여러분!

이번 회기는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의안
의 처리와 도내 일부 벽지학교를 직접 방문
하여 교육환경여건 파악은 물론 어려운 여
건하에도 묵묵히 교육에 전념하고 계시는
교직원들을 격려해 주시는 등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2차 본회의 산회와 아울
러 제77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폐회
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폐회)

0 출석위원 : 10명

의장 박재현, 부의장 조일환, 위원 김정길, 정만재, 이기수, 김광수,
신용철, 박동기, 안병일, 이경윤.

0 출석공무원 : 14명

교육감 김영세,	부교육감 구관서,	초등교육국장 조성근,
중등교육국장 송대현,	관리국장 신재철,	기획감사담당관 김진성,
행정관리담당관 정금옥,	초등교직과장 노현우,	중등장학과장 이재관,
중등교직과장 김영기,	과학기술과장 백경흠,	총무과장 고일영,
행정과장 이상찬,	시설과장 박성근.	

議 事 日 程(案)

第77回忠清北道教育委員會(臨時會)

'97.6.26~6.30.(5일간)

일 시	부 의 안 건	비 고
<p>'97.6.26(목)</p> <p>10:00</p> <p>11:00</p> <p>14:00</p> <p>f</p>	<p><input type="checkbox"/> 교육위원 협의회(교육위원실)</p> <p><input type="checkbox"/> 개회식</p> <p>[제1차 본회의 개의]</p> <p>1. 제77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회기 : 1997. 6. 26 ~ 6. 30.(5일간)</p> <p>2. 충청북도과학전람회조례폐지조례안(제안설명)</p> <p>3. 충청북도공업고등학교부설직업훈련과정설치조례폐지 조례안(제안설명)</p> <p>4. 충청북도방송통신고등학교수당지급조례폐지조례안 (제안설명)</p> <p>5. 충청북도중·고등학교특별장학생에 관한조례개정조례 안(제안설명)</p> <p>6. 벽지학교 방문의 건(제안설명)</p> <p>[제1차 본회의 산회]</p> <p><input type="checkbox"/> 벽지학교 방문</p> <p>· 6. 26(목) : 벽지학교(진천) -백곡초등학교성대분교장</p>	

일 시	부 의 안 건	비 고
'97.6.27(금) 10:00 ∫ 6. 28(토) 10:00	<input type="checkbox"/> 벽지학교 방문 · 6.27(금) : 벽지학교(음성) - 남신초등학교덕생분교장 - 생극초등학교관성분교장 · 6.28(토) : 벽지학교(괴산) - 청천초등학교신월분교장	본회의 휴회
'97.6.29(일)	공 휴 일	
'97.6.30(월) 11:00	<p>[제2차 본회의 개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충청북도과학전람회조례폐지조례안 2. 충청북도공업고등학교부설직업훈련과정설치조례폐지조례안 3. 충청북도방송통신고등학교수당지급조례폐지조례안 4. 충청북도중·고등학교특별장학생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기타안건 처리 <p>[제2차 본회의 산회]</p> <p style="text-align: center;">※ 폐회</p>	

(별첨 2)

의안번호	제 11-1 호
의결 년 월 일	1997. 6. (제 회)

충청북도과학전람회조례폐지조례안

제 출 자	충청북도교육감
제출년월일	1997. 6. 18.

충청북도과학전람회조례폐지조례안

의안 번호	77-1
----------	------

제출년월일 : 1997. 6. 18.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폐지사유

전국과학전람회규칙(총리령 제581호., '96. 8. 6.)에 준거하여 충청북도과학전람회를 개최하므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폐지근거

총리령 제581호 전문개정 1996. 8. 6.

조 례 안 : 덧붙임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

충청북도과학전람회조례폐지조례안

=====

충청북도과학전람회조례(충청북도조례 제755호., 1976.10.12.)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첨 3)

의안번호	제 11-2 호
의결 년 월 일	1997. 6. (제 회)

충청북도공업고등학교부설직업훈련과정설치조례폐지조례안

제 출 자	충청북도교육감
제출년월일	1997. 6. 18.

충청북도공업고등학교부설직업훈련과정설치조례폐지조례안

=====

의안 번호	11-2
----------	------

제출년월일 : 1997. 6.18 .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 폐지사유

- 공고부설직업훈련과정 설치학교 폐교 (옥천공고)
- 중학교 졸업생의 고등학교 진학 및 고등학교 졸업생의 대학 또는 전문대학 진학기회의 확대에 따른 공고부설 직업훈련과정 입학지원자의 급감으로 운영 곤란
- 현재 인문계고등학교(11개교) 직업과정반 운영
- 노동부 산하 공공직업훈련원(도내 4개 기관) 설치로 직업교육기회 확대

□ 폐지근거

위와 같은 폐지사유에 따라 운영의 곤란으로 "공고부설직업교육훈련과정설치계획 변경" 교육부에 제출

□ 조 례 안 : 덧붙임

□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

충청북도공업고등학교부설직업훈련과정설치조례폐지조례안

충청북도공업고등학교부설직업훈련과정설치조례(충청북도조례 제1664호., 1988.12.16.)
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첨 4)

의안번호	제 11-3 호
의결 년 월 일	1997. 6. (제 회)

충청북도방송통신고등학교수당지급조례폐지조례안

제 출 자	충청북도교육감
제출년월일	1997. 6. 18.

충청북도방송통신고등학교수당지급조례폐지조례안

=====

의안 번호	17-3
----------	------

제출년월일 : 1997. 6. 18 .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폐지사유

한국교육개발원 방송통신교육 연구본부에서 전국 방송통신고등학교 사업·예산 협의회를 통하여 조정된 사항을 자체 방송통신고등학교 운영계획으로 대체하므로써 본 조례를 폐지하고 행정의 간소화 및 능률을 도모하고자 함.

폐지근거

해당없음

조 례 안 : 덧붙임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

충청북도방송통신고등학교수당지급조례폐지조례안

=====

충청북도방송통신고등학교수당지급조례(충청북도조례 제670호., 1975. 9.17.)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첨 5)

의안번호	제 11-4 호
의결 년 월 일	1997. (제 . 회)

충청북도중·고등학교특별장학생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 출 자	충청북도교육감
제출년월일	1997. 6. 18.

충청북도중·고등학교특별장학생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77-4
----------	------

제출년월일: 1997. 6. 18.

제 출 자: 충청북도교육감

□ 개정사유

충청북도중·고등학교특별장학생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특별장학생의 선발은 당해학교 교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추천된 특별장학생 후보자를 교육감(중학생은 지역교육장)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는 중복 심의기능을 배제하고, 당해학교로 선발권한을 위임하고 특별장학생 선발에 관한 업무를 간소화하기 위함임.

□ 주요골자

- 학교장이 특별장학생 후보자를 교육감에게 추천하여 교육감이 선정하는 것을 학교장이 선정하도록 함(제4조).
- 탈락자 발생시 승계 추천하여 교육감이 선정하는 것을 자체에서 승계 선정할 수 있도록 함(제8조).
- 장학생 추천서를 당해 학교장에게 추천할 수 있도록 변경함(별지).

□ 개정근거 : 해당없음

□ 조 례 안 : 붙임과 같음

□ 참고사항

- 신·구조문대비표

충청북도중·고등학교특별장학생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중·고등학교특별장학생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특별장학생의 선정) 중·고등학교의 장은 별지 추천 서식에 의한 특별장학생 후보자중에서 교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매학년도 개시 1월 이내에 특별장학생을 선정한다.

제8조중 "승계 추천할 수 있다."를 "승계 선정할 수 있다."로 한다.

[별지] 장학생 추천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 문 대비 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생략)	제1조(목적) (현행과 같음)
제2조(특별장학생의 요건) (생략)	제2조(특별장학생의 요건) (현행과 같음)
제3조(특별장학생의 정수) (생략)	제3조(특별장학생의 정수) (현행과 같음)
제4조(특별장학생의 선정) ① <u>중·고등학교의 교장은 교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별지 추천서식에 의하여 특별장학생 후보자를 교육감에게 추천할 수 있다.</u>	제4조(특별장학생의 선정) <u>중·고등학교의 장은 별지 추천 서식에 의한 특별장학생 후보자중에서 교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매 학년도 개시 1월 이내에 특별장학생을 선정한다.</u>
② <u>교육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 받은 후보자중에서 심의를 거쳐 매학년도 개시 1월 이내에 특별장학생을 선정한다.</u>	
제5조(장학금 지급) (생략)	제5조(장학금 지급) (현행과 같음)
제6조(지급기간 등) (생략)	제6조(지급기간 등) (현행과 같음)
제7조(지급중지) (생략)	제7조(지급중지) (현행과 같음)
제8조(탈락자의 승계) 학교장은 장학생중 탈락자가 발생했을 경우 이를 <u>승계 추천할 수 있다.</u>	제8조(탈락자의 승계) <u>승계 선정할 수 있다.</u>
제9조(시행규칙) (생략)	제9조(시행규칙) (현행과 같음)
부 칙	부 칙
(생략)	이 조례는 1998년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
<u>[별지] 장학생 추천서(서식 생략)</u>	<u>[별지] 별지와 같음</u>

(별첨6)

벽지학교 방문의 건

의안 번호	77-5
----------	------

발의년월일 : 1997년 6월 18일

발 의 자 : 신용철 교육위원 외 3인

1. 주 문

제77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중 벽지학교를 다음과 같이 방문한다.

가. 방문일자 : 1997. 6. 26(목) ~ 6. 28(토) / 3일간

나. 대상기관(교) : 4교

- 백곡초등학교성대분교장(라지역)
- 남신초등학교덕생분교장(“)
- 생극초등학교관성분교장(“)
- 청천초등학교신월분교장(, “)

다. 방문일정 : 붙임 참조

2. 이 유

가. 벽지교 교육환경 실태파악

나. 교직원 격려 및 사기진작 도모

다. 교육현장 의견 수렴을 통한 의정활동 자료 수집

벽지학교 방문일정

월 일	시 간 별	내 용
'96.6.26(목)	14:00 15:30 17:30	0 교육위원회 출발 0 백곡초등학교성대분교장 0 교육위원회 도착, 해산
'97.6.27(금)	10:00 11:30 12:00 15:00 17:00	0 교육위원회 출발 0 남신초등학교덕생분교장 0 오찬 및 이동 0 생극초등학교관성분교장 0 교육위원회 도착, 해산
'97.6.28(토)	10:00 11:30 12:00	0 교육위원회 출발 0 청천초등학교신월분교장 0 오찬 및 해산

